

#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대구시 달성군과 대구테크노파크에서는 달성군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2월 20일

대구시 달성군수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통한 달성군 소재 기업의 성장 촉진
- 미래 산업분야 지원 강화를 통해 R&D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 기업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

□ **과제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5. 1. 31.까지

□ **지원유형** : R&D / 자유공모

□ **지원분야** : 미래모빌리티, 의료, 로봇, 기계부품, 뿌리산업 등 선도기술

## 2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주관기관) 사업자등록증(공고일) 기준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시 달성군 소재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달성군 내에서 R&D 수행 가능한 중소기업
  - 달성군 소재 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우대

## □ 지원규모 및 참여조건

구 분	주요내용
신규 지원규모	· 3社 정도
과제당 지원금	· 최대 8천만원 이내
지원기간	· 1년 이내 (2025년 1월 31일까지)
주관기관 참여조건	· 대구 달성군내 본점 또는 사업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참여기관 참여조건	※ 주관기관 단독 참여

## □ 사업비 구성

### ○ 민간부담금 규모

-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민간에서 부담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민간부담금 산정 예시 >

(단위: 천원)

구 분	지원금 (75%)	민간부담금 (25%)			총사업비 (100%)
		현금 (10%)	현물 (90%)	합계(100%)	
기술개발 (R&D)	80,000	2,667	24,000	26,667	106,667

### ○ 지원금 지급방법

- 선정된 과제 협약체결 후 일시 지급
  - ※ 선정기업은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의무 가입 및 제출(협약체결 시 상세 안내 예정)

### ○ 사업비 구성 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기재

- 부가세는 별도 기업부담

### ○ 신규채용 참여연구원 현금인건비 지원

-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경우 참여율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최대 6개월 지원)

※ 공고개시일 기준 6개월(2023.8.21 이후) 전부터 과제수행 기간 내 채용한 연구원

### ○ 사업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 별표 1. 사업비 사용용도 및 세부산정기준에 따름

## □ 지원제외 대상

-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이미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 신청하는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에 의해 기 지원 받았거나 수행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의무 사항(보고서 제출,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였거나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제재를 받고 있거나 대표가 신용불량 등으로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인 경우
  -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인력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현행 법령 위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선정 이후 과제진행 중 상기 지원제외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사업비 환수 조치 (기업, 대표, 총괄책임자 포함)

## 3

## 평가방법

### □ 평가방법(상대평가)

- 1차 서면평가 :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로 평가
- 2차 발표평가 :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점수
기술성	개발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등	20점
목표 및 필요성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적정성, 개발의 당위성 등	15점
개발전략	참여인력의 구성 / 주관기관의 업무분담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등	15점
사업화 가능성	개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시장전망과 사업화가능성 매출 및 고용창출 효과 등	50점

## □ 우대사항

우대사항	가점
▶ 주관기관이 1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과제 참여인력으로 신청하는 경우 ※ 2023.8.21. 이후 채용한 인원에 한함	3점
▶ 구매조건부(거래처 구매확약서 제출) 과제	3점
▶ 달성군 「신산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지원사업」 과제를 수행한 기업 또는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을 통해 기술 이전을 받은 기술로 본 과제를 신청한 기업	3점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보유기업	2점
▶ 공고일 기준, 청년(만 39세 이하) 또는 여성창업자로서 업력 3년 이내 기업	2점

※ 상기 우대사항은 1차 서면평가에만 반영되며, 최대 10점 부여

## 4 추진 일정

모집 공고 2024. 2. 20. ~ 3. 28.	▶	신청서 접수 2024. 3. 26. ~ 3. 28.	▶	선정평가위원회 (서면, 현장방문, 발표) 2024. 4월 중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및 기업부담금 입금 2024. 5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사용설명회 개최 2024. 5월	◀	평가결과 개별통보 2024. 5월
과제 수행 협약일 ~ 2025. 1. 31	▶	지원금 지급 2024. 6월	▶	과제 수시 모니터링 수시(과제 수행 기간내)
사업비 집행현황 점검 (서면) 2025. 1월 초	◀	중간점검 (현장방문) 2024. 11월	◀	사업비 집행현황 점검 (서면) 2024. 8월 초
결과보고서 제출 2025. 2월 말	▶	최종 평가 (현장방문, 발표) 2025. 3월	▶	사업비 정산 및 기술료 징수 2025. 4월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5

##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24. 2. 20.(화) ~ 3. 28.(목) [38일간]
- 접수기간** : 2024. 3. 26.(화) ~ 3. 28.(목), 17:00까지 [3일간]
- 접수방법** : E-mail 제출 후 방문 제출(우편제출 가능)
- 접수 및 문의처**

접수처	대구테크노파크 글로벌정책지원본부 기술사업화지원센터
주 소	(41256) 대구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테크노파크 동대구캠퍼스 1동 7층
담당자	강지훈 책임연구원
연락처	053-757-3782 / happymaker@dgtp.or.kr

- 신청서식** : 홈페이지 다운로드
  - 대구테크노파크 (www.dgtp.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대구하나로지원센터 (www.hittp.org) > [지원사업] > [지원사업공고]

###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서식	비고	제출방법	
				E-mail	방문
1	사업신청서 1부	서식 1	필수	○	○
				한글문서	직인원본
2	사업계획서 1부	서식 2	필수	○	X
				한글문서	
3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3	필수	X	○
4	중복지원금지 약속서	서식 4	필수	X	○
5	우대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서식 5	해당 시 (우대사항)	X	○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수	X	○
7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1부		해당 시 (법인기업)	X	○
8	최근 2년간(21~22년) 결산재무제표 각 1부		필수	X	○
9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필수	X	○

※ 모든 서류 제본 및 스테이플러 금지, 위의 순서대로 A4에 인쇄 후 집계 이용 제출

※ 미비서류가 있을 시 접수가 취소될 수 있음, 접수기간 이후에는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기술료 징수**□ **징수대상**

- 기술개발사업 종료 후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관은 정액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정액기술료 징수율**

주관기관	정액기술료 징수율	비 고
중소기업	지원금의 10%	- 기술료 실시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일시납 또는 균등분할 납부 - 지원금의 범위 : 정산 반환금을 제외한 실질행 지원금

□ **정액기술료 감경조건**

- (평가결과) ‘혁신성과’ 과제에 대해 납부할 기술료의 30% 감경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일 경우에 한해 가능
    - 감경받은 기술료는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
  - (납부방법) 정액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일 기준
    - 30일 이내 전액 일시납부 시 : 기술료의 40% 감경
    - 1년 이내 전액 일시납부 시 : 기술료의 30% 감경
    - 2년 이내 균등 분할납부 시 : 기술료의 20% 감경
- ※ 30일 이내 정액기술료 전액 일시납부 외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